

# - 2025년 광주 자동차산업 이중구조 개선 지원사업 -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공고

광주광역시에서는 고용노동부 「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」의 일환으로, 「2025년도 광주 자동차산업 이중구조 개선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.

2025년 3월 24일

광주광역시장

## 1. 사업개요

가. 사업 목적 : 광주 자동차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은 자동차산업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, 취업희망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, 광주 자동차산업 구인난 지원하고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

### 나. 지원 대상

(기 업) 광주광역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(산업코드 C30) 또는 자동차산업 협약 기업(현대자동차·기아) 협력사(상시근로자 500인 이하)

**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30 (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)**

30110, 30121, 30122, 30201, 30202, 30203, 30310, 30320, 30331, 30332, 30391, 30392, 30393, 30399, 30400

※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나 위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별도 문의 요망

(근로자) 상기 기업 재직근로자 또는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 (채용예정자 포함)

다. 지원기간 : '25. 3. 24. ~ '25. 12. 31.(예산소진시까지, 선착순 )

라. 세부사업별 지원내용

세부사업	지원내용
<a href="#"><b>① 상생일자리 도약장려금</b></a>	-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협약기업 협력사 대상 만 35세~49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 지원 - 1인당 연 최대 360만원 (월 60만원, 최대 6개월 지원)
<a href="#"><b>② 상생일자리 안착지원금</b></a>	-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협약기업 협력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근로자(만18세 이상 59세 이하)에게 3,6개월 근속시 지원금 지급 - 1인 3, 6개월 근속시 각 100만원(연 최대 200만원)
<a href="#"><b>③ 공동이용시설 개선</b></a>	-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협약기업 협력사 대상 근로자 근무환경 및 복지편의시설 개·보수 비용 지원 - 1개사 당 최대 900만원(자부담 10%이상)
<a href="#"><b>④ 건강검진비 지원</b></a>	-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협약기업 협력사 근로자 중 건강검진 실시한 자에게 검진비 지급 - 1인당 30만원 범위내 실비지급

## 2. 세부사업별 사업내용

### **① 상생일자리 도약 장려금**

○ 지원대상 :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

- '24. 4. 25. ~ '25. 8. 31. 기간 내 채용한 만 35~59세(1990~1965년) 이하 대상자

※ 공고일(25.3.21) 이전 채용자 :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
공고일(25.3.21) 이후 채용자 :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
- 해당 기업에서 근로기간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

- 아래 근로조건을 충족한 자

(근로계약)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
(보험적용)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

(근로시간)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

(임금수준)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

○ 지원인원 : 47명 (피보험자 수의 30% 이내, 기업당 최대 5명)

○ 지원기간 : 최대 6개월

○ 지원내용 : 월 60만원 (최대 360만원)

※ 당해 연도에 한하여 지원금이 지급(이월 불가)되며, 참여 시기에 따라 6개월분 전액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

## ② 상생일자리 안착 지원금

### ○ 지원대상 :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

- '24. 4. 25.이후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8~59세(2007~1965년)이하 대상자  
※ 단, 50-59세(1975~1965년)인 자는 관련 분야 최소 경력 5년 이상
- 아래 근로조건을 충족한 자
  - (근로계약)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  - (보험적용)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
  - (근속기간) 해당 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여 재직 중인 자
  - (근로시간)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

### ○ 지원인원 : 60명

### ○ 지원기간 : 최대 6개월

### ○ 지원내용 : 3, 6개월 차 근속 시마다 100만원 (최대 200만원)

※ 당해 연도에 한하여 지원금이 지급(이월 불가)되며, 참여 시기에 따라 6개월분 전액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

## ③ 공동이용시설 개선

### ○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 1명 이상의 신규 취업자를 채용한 기업

### ○ 지원규모 : 15개사

### ○ 지원내용 : 근로자 근무환경 및 복지편의시설 개·보수 비용 지원

구 분	내 용
시설 개보수	. 기숙사, 휴게실, 식당, 회장실, 사워실, 세탁실, 정화조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·보수
물품 구입	. 지원 불가

### ○ 지원수준 : 기업당 최대 900만원 (자부담금 10% 필수)

채용인원	1명	2명 이상
지원 한도	450만원	900만원

※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기준이며, 채용인원에 따른 차등 지원

#### ④ 건강검진비 지원

- 지원대상 : 광주지역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(산업코드 C30) 또는 자동차 산업 협약기업(현대자동차·기아) 협력사(상시근로자 500인 이하)

※ (우대) 2025년 신규 채용이 발생한 기업 우선 지원

- 지원인원 : 50명 (피보험자 수의 30% 이내, 기업당 최대 10명)

- 지원내용 : 자동차산업 재직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

- 지원수준 : 1인 30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

- 기타사항
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에서 실시한 검진 비용에 한해서만 지원하며, 지원금은 ① 개인 환급 방식 또는 ② 기업 정산 방식 적용 가능

① 개인 환급 방식 : 지원대상자가 개인 지출을 통해 검진비를 결제한 경우, 재직 중인 기업의 사업주 확인서 제출 후 개인에게 지급

② 기업 정산 방식 : 재직 중인 기업에서 법인카드로 검진비를 결제한 경우, 해당 기업에 지급

- 미용·성형·다이어트 관련 검진 및 기타 비의료 목적의 검진은 지원 불가하며, 허위 영수증 제출 및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 가능

### 3. 신청 및 지원절차

가. 사업신청 방법 : 광주광역시(gwangju.go.kr) 누리집 고시·공고/입법예고 메뉴 또는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(gjcci.or.kr)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, 지원신청서 이메일 접수

나. 지원절차



## 4. 신청(제출) 서류

### ① 상생일자리 도약 장려금

No	목록(제출서류)	부수	비 고
<b>[사업 참여 전] - 사업신청서 제출 최소 10일전 제출</b>			
1	정규직 채용(전환) 명단 제출서(기업 작성) - 첨부1) 근로계약서 사본(근로기준법 상 위반사항이 없는 근로계약서) - 첨부2)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(근로자용)(신청월 발급본) - 첨부3) 사업주(대표이사)의 가족관계 증명서(상세)(3개월이내 발급본)	1부	서식 4 및 증빙서류
2	사업주 확인서(채용자 명단 제출시)	1부	서식 4-1
3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(근로자용)	1부	서식 4-2
<b>[사업 참여 신청시] - 사업 수행 전</b>			
4	「자동차산업 상생일자리 도약 장려금」 참여 신청서	1부	서식 1
5	사업주 확인서(사업 참여 신청시)	1부	서식 1-1
6	「자동차산업 상생일자리 도약 장려금」 사업 지원 협약서	1부	서식 2
7	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(사업주용)	1부	서식 3
8	고용보험료 완납 증명서(신청월 발급본)	1부	증빙서류
9	사업자 등록증	1부	
10	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(채용일 직전월~신청월 발급본)	1부	
11	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(사업장 총괄카드 조회-캡처) ※ 업종코드(C30) 확인 안될시 추가서류(해당 기업 제출) - SQ인증서·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	1부	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( <a href="https://total.comvel.or.kr">https://total.comvel.or.kr</a> )
<b>[지원금 신청 시] - 지원금 지급 도래일 후</b>			
12	「자동차산업 상생일자리 도약 장려금」 지급 신청서	1부	서식 6
13	사업주 확인서(지원금 신청시)	1부	서식 6-1
14	임금지급 증빙자료(급여대장 및 이체증)	각1부	증빙서류
15	기업명의 통장사본	1부	
16	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(신청월 발급본)	1부	
17	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(채용직전월~지급월 발급본)	1부	
<b>[중도퇴사 시]</b>			
18	중도퇴사자 명단 제출서	1부	서식 5
19	사직서	1부	증빙서류

## ② 상생일자리 안착 지원금

No	제출서류	제출	비 고
<b>[사업신청 전] - 사업신청서 제출 최소 10일전 제출</b>			
1	정규직 채용(전환) 명단 제출서(기업 작성) - 첨부1) 근로계약서 사본(근로기준법 상 위반사항이 없는 근로계약서) - 첨부2)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(근로자용)(신청월 발급본) - 첨부3) 사업주(대표이사)의 가족관계 증명서(상세)(3개월이내 발급본)	1부	서식 3 및 증빙서류
2	근속 승계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(채용자 명단 제출시)	1부	서식 3-1
3	경력 사실확인서(해당 참여자) *만50~59세 신청자 필수	1부	서식 3-2
<b>[사업신청 시] - 사업 수행 전</b>			
4	「자동차산업 상생일자리 안착 지원금」 참여 신청서	1부	서식 1
5	참여자 확인서(사업 참여 신청시)	1부	서식 1-1
6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(참여자)	1부	서식 2
7	사업자 등록증	1부	증빙서류
8	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(채용일 직전월~채용일 이후 신청월 발급본)	1부	
9	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(사업장 총괄카드 조회-캡처) ※ 업종코드(C30) 확인 안될시 추가서류(해당 기업 제출) - SQ인증서·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	1부	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( <a href="https://total.comwelork">https://total.comwelork</a> )
<b>[지원금 신청 시] - 지원금 지급 도래일 후</b>			
10	「자동차산업 상생일자리 안착 지원금」 지급 신청서	1부	서식 4
11	참여자 확인서(지원금 신청시)	1부	서식 4-1
12	임금지급 증빙자료(급여이체증)	1부	증빙서류
13	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(근로자용)(신청월 발급본)	1부	
14	본인명의 통장사본	1부	
15	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(채용직전월~지급월 발급본)	1부	
<b>[중도퇴사 시]</b>			
16	중도퇴사자 명단 제출서	1부	서식 5
17	사직서	1부	증빙서류

### ③ 공동이용시설 개선

No	목록(제출서류)	부수	비 고
<b>[사업 참여 신청시] -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전</b>			
1	「자동차산업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사업」 신청서	1부	서식 1
2	「자동차산업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사업」 계획서	1부	서식 2
3	사업주 확인서 (사업참여 신청시)	1부	서식 3
4	정규직 채용(전환) 명단 제출서(기업 작성) - 첨부1) 근로계약서 사본(근로기준법 상 위반사항이 없는 근로계약서) - 첨부2)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(신청월 기준) - 첨부3) 사업주(대표이사)의 가족관계 증명서 (3개월이내 발급본)	각1부	서식7 및 증빙서류
5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(근로자용)	1부	서식7-1
6	사업자 등록증	1부	증빙서류
7	건축물대장	1부	정부24 ( <a href="http://www.gov.kr">www.gov.kr</a> )
8	재무제표(2024년)	1부	
9	공사 관련 서류 1) 견적서(산출내역서 포함) 2) 비교견적서(1개사 이상) 3) 공사도면	각 1부	증빙서류
10	국세 납입 증명서(신청월 기준)	1부	
11	지방세 납입 증명서(신청월 기준)	1부	정부24 ( <a href="http://www.gov.kr">www.gov.kr</a> )
12	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(신청월 기준)	1부	증빙서류
13	사업장 산업분류코드 확인서(사업장 총괄카드 조회-캡처) ※ 산업분류코드(C30) 확인 안될시 추가서류(해당 기업 제출) - SQ인증서·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	1부	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( <a href="https://total.comwel.or.kr">https://total.comwel.or.kr</a> )
<b>[사업 선정 후] - 사업선정 통보 받은 후 즉시 제출</b>			
14	「자동차산업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사업」 협약서	1부	서식 4
15	「자동차산업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사업」 자부담 확약서	1부	서식 5
16	「자동차산업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사업」 보조금 반환 확약서	1부	서식 6
<b>[지원금 신청 시] - 공동이용시설 개·보수 후</b>			
17	공동이용시설 개선지원 개·보수 시행 결과 보고서	1부	서식8
18	사업 성실 이행 서약서	1부	서식9
19	공사 업체 계약서 및 견적서	각 1부	
20	공사 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	각 1부	
21	공사 대금 거래 내역 증빙서(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 등)	각 1부	증빙서류
22	공사 대금 이체 확인증	1부	
23	기업 명의 통장 사본	1부	

## ④ 건강검진비 지원

No	목록(제출서류)	부수	비 고
<b>[사업 참여 신청시] - 건강검진 시행 전</b>			
1	「자동차산업 근로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」 참여 신청서	1부	서식 1
2	사업주 확인서(사업 참여 신청시)	1부	서식 1-1
3	「자동차산업 근로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」 대상자 근로자 명부 - 첨부1) 근로계약서 사본(근로기준법 상 위반사항이 없는 근로계약서) - 첨부2)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(신청월 발급본) - 첨부3) 사업주(대표이사)의 가족관계 증명서(상세)(3개월이내 발급본)	1부	서식 2
4	(지원 대상자별)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대한 동의서	각1부	서식 3
5	「자동차산업 근로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」 협약서	1부	서식 4
6	사업자 등록증	1부	증빙서류
7	고용보험료 완납 증명서(신청월 기준)	1부	
8	국세 납입 증명서(신청월 기준)	1부	
9	지방세 납입 증명서(신청월 기준)	1부	
10	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(사업장 총괄카드 조회-캡처) ※ 업종코드(C30) 확인 안될시 추가서류(해당 기업 제출) - SQ인증서·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	1부	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( <a href="https://total.comwel.or.kr">https://total.comwel.or.kr</a> )
<b>[지원금 신청 시] -건강검진 시행 후</b>			
11	「근로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」검진비 지급 신청서 - 첨부1) 건강검진비 납부 확인 서류(영수증 및 결제내역) - 첨부2) 건강검진 사실 확인 서류(아래 서류 中 택1) (건강검진 확인서, 진료확인서, 건강검진결과서 표지(개인정보제외)) - 첨부3) 법인카드 결제 사실 확인 서류(카드 앞면 사진)	각1부	서식 5
12	사업주 확인서(지원금 신청시)	1부	서식 5-1
13	「근로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」건강검진 시행 확인서	1부	서식 6
14	기업명의 통장사본	1부	증빙서류

## 5. 기타 유의사항

### 가. 지원 제외 기업

-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-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
  -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로부터 1년 참여 제한
- 고용보험료 미가입 및 체납기업
- 사업주가 대상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(중복지원 제한)
- 기업에서 대상자를 파견·용역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한 경우
- 해외 법인의 국내 기업 및 지사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등
- 사업참여 중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기업
- 동일사업주·사업장 간의 6개월 이내 이직으로 인한 지원금은 지급 불가
-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참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업
- 참여기업이 신규 채용 후 인위적 감원이(고용조정 이직에 해당) 발생 했을 경우 감원 발생한 월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에서 제외됨

### 나. 지원 제외 근로자

- 채용일 기준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
- 근로계약서 미작성자 및 4대보험 미가입자
-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
-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(사업주 단위)에 재취업한 자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
※ 단,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

## 다. 기타사항

- 사업참여 및 지원금 신청 시,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(gjcci.or.kr)를 통해 각 세부사업별 하단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
-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약 철회 또는 중도해지, 지원금 반환·추가 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
-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사업유형별 운영지침을 따름

## 6. 접수 및 문의처

가. 접수기간 : 2025. 3. 24.(월) ~ 예산 소진 시 (선착순 모집)

나. 접수방법 : 사업유형별 이메일 접수

다. 문의처

기관명	담당자명/연락처	세부사업명	이메일
광주상공회의회 협력사업본부	김명희 062-350-5894	상생일자리 도약장려금	doyak.gj@gmail.com
		상생일자리 채움지원금	chaeum.gj@gmail.com
	오하나 062-350-5898	공동이용시설 개선	betworkeco.gj@gmail.com
		건강검진비 지원	betworkeco.gj@gmail.com

## 라. 별첨

- 사업 신청 서식
-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 현황